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2차 교육위원회)
2021. 11. 23.(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국기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10월 29일
- 회부일자: 2021년 11월 1일

3. 제안이유

- 도내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교육감의 책무 (안 제3조)
- 지원계획 수립 (안 제4조)
- 실태조사 (안 제5조)
- 지원사업 및 대상 (안 제6조~7조)
- 의료비 지원 범위 (안 제8조)
- 지원 신청 (안 제9조)
- 의료비 지급 (안 제10조)
-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 (안 제11조)
- 협력체제 구축 (안 제12조)

5. 조례안 예고

- 2021.11.3.(수) ~ 2021.11.8.(월) 특기할 사항 없음

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도내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- 안 제3조에서는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,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 난치병 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난치병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, 의료비 지원 등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정하였음.
- 안 제7조에서는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학생으로 정하고, 안 제8조에서는 연도별 1인당 의료비 지원 한도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, 안 제11조에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선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,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 모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